

<p>제개정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관련 세부규칙을 조속히 마련하여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-그밖에 전문예술법인·단체의 지정·취소, 지원·육성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</p> <p>○ 미술장식품을 제작·설치할 경우 건축주에게 공모를 통한 방법에 의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안과 관련하여(안 제17조),</p> <p>-이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의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일정규모나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물 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미술장식품을 의무로 제작·설치하여야 하며, 그동안 미술장식품을 제작하는 예술가와 건축주와의 암묵적인 거래 관행 및 비리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주에게 미술장식품을 설치할 경우에는 공모를 통한 방법으로 설치토록 권장하고자 하는 내용임.</p> <p>-이 경우 상위법에 근거 규정이 없고 공모를 통하지 않은 방법에 대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긴 하지만 건축주에 대한 심적인 부담을 줄으로써 어느 정도 강제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다만, 공모를 통한 경우에는 일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운영상의 묘를 기한다고 하나 이 경우 인센티브 부여의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.</p> <p>-그밖에 미술장식품의 사후관리, 가격결정, 서울특별시건축위원회미술장식품분과위원회의 기능, 위원의 구성 및 해촉 등에 관해서 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</p> <p>○ 기타,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현행 "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"를 두고 있으나 그 명칭을 "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회"로 명칭변경하는 안(안 제33조)과 당초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소관사항이던 기금의 조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기금운영심의회의 기능으로 변경하는 안(안 제34조),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정총액의 확대하는 안 (60%→80%, 안</p>	<p>제30조)등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</p> <p>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</p> <p>5. 토론요지 : 없음</p> <p>6.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: 구성하지 않았음</p> <p>7. 심사결과 : 수정안가결</p> <p>가. 수정이유</p> <p>문화진흥위원회 위원 구성에 교육계 인사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포함시키고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연임 회수를 구체화함.</p> <p>나. 주요골자</p> <p>○ 문예진흥위원회 위원에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1인 포함(안 제4조제2항)</p> <p>○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5조제3항)</p> <p>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</p> <p>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</p> <hr/> <p>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</p> <p>서울특별시립박물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</p> <p>제3조제1항중 "위원장 1인"을 "위원장 2인"으로, "20인 이내의"를 "25인 이내의"로 하고, 동조제2항중 "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"를 "위원장 중 1인은 행정(1)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, 1인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"로 한다.</p> <p>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7. 박물관 운영전반에 관한 발전적 대안 제시</p> <p>8. 기타 위원장 또는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</p> <p>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</p> <p>제11조의2(소위원회 구성·운영)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②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 칙</p>
---	--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 
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16조제1항중 “생활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”을 “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”으로 하고, 동조제2항에 제5호를, 동조에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서울월드컵경기장

⑤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·운영한다.

별표 1의 “잠실종합운동장”란 다음에 “서울월드컵경기장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동대문운동장”란 중 “동대문씨름장” 및 “효창운동장내 테니스장”을 각각 삭제한다.

명칭	시설명	기능	위치
서울월드컵 경기장	주경기장	축구, 각종행사	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515번지 일원
	보조경기 장	축구, 각종행사	“

별표 2 중 “체육경기”란의 명칭을 “체육행사”로 하고, “잠실종합운동장”란 다음에 “서울월드컵경기장”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“동대문운동장”란 중 “배구장(씨름장)” 및 “역도장”을 각각 삭제한다.

운동장별	체육행사	체육이외행사
서울월드컵 경기장	주경기장	230,000
	보조경기장	70,000

별표 3의 “시설별”란 중 “씨름장” 및 “수영장(실외)·(대인)·(소인)”을 각각 삭제한다.

별표 6 “음향시설”의 산출기준란 중 “단, 올림픽주경기장의 기본료는 60,000원”을 “단, 올림픽주경기장 및 서울월드컵주경기장의 기본료는 60,000원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  
조례안에대한수정안**

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 
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 제2항 중

“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  
서 추천한 2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  
함하여”를 “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  
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, 서울시 교육  
감이 추천하는 1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  
을 포함하여”로 한다

안 제35조 제3항 중

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  
되”를 “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  
년으로 하되,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 
연임할 수 있고”로 한다.

**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문화예술진흥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 
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설치) 서울특별시(이하 “서울시”라 한다)  
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 
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의 자문  
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화예술  
진흥위원회(이하 “문예진흥위원회”라 한다)  
를 구성·운영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기능) 문예진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  
항을 심의·자문한다

-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 
계획에 관한 사항
- 서울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  
의 지정·취소에 관한 사항
- 기타 서울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구성) ① 문예진흥위원회는 회의안건에  
따라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문예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 
에서 추천하는 2인, 서울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 
1인과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을 포함하여  
문화예술분야에 조예가 깊고 덕망이 있는 자